

# 공정위,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 제시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10월 2일(목)에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 개혁방안 3개 분야, 12개 과제 및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개선과제」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하였는 데, 동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자 관련 규제완화

### 1-1. 중소기업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면제

#### 가. 규제현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금융기관은 매입의무를 면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3)
- 외국인투자기업, 언론기관 등도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면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3)
-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화학, 전자공업부문의 경우 공장시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도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처리규칙 별표2)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근저당설정금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 '96년 중소기업의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건설교통부 추정) : 약 1,807억원

※ '96년 소기업의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건설교통부 추정) : 약 720억원 = 1807 × 40%

(중소기업 대출중 소기업 대출비율 추정치)

#### 나. 개선방안

- 1단계 : '98. 7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면제
- 2단계 : 2000년부터 면제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 \*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해 기존 매입면제대상의 합리적 조정,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등 보완대책 강구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 · 건설교통부

· 통상산업부와 합의

- 관계부처 조치계획 : '98년 상반기중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개정

**1-2. 전기·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완화**

가. 규제현황

-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코자 할 경우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에 일정 좌수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함
- 근거법령

전기공사법시행령 제8조1항 및 별표1(면허기준)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제6조1항 및 별표1(허가기준)
- 1종 공사업 면허취득시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00좌를 의무적으로 출자 ※ 1좌당 약 20만원	- 일반공사업 1등급 허가시 • 전기통신공제조합에 250좌를 의무적으로 출자 - 일반공사업 2등급 허가시 • 전기통신공제조합에 100좌를 의무적으로 출자 ※ 1좌당 약 20만원

- 도입배경  
• 공제조합의 자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무출자제 도입

나. 개선방안

- 전기·전기통신공사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

한 “의무출자제”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2년 7월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  
 • 전기공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면허기준) 및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제6조 별표1(허가기준)을 각각 개정

〈건설교통부의 완화 사례〉

- 금년 7월 建設産業基本法施行令 개정시 控除組合과 관련된 조항을 개선
- 건설공제조합 :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  
예) 토목공사업 : 98. 6. 30까지 250좌이상, 99. 6. 30까지 200좌이상, 2000. 6. 30까지 100좌이상
- 전문건설공제조합 :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  
예) 미장방수공사업 : 98. 6. 30까지 50좌이상, 2000. 6. 30까지 40좌이상, 2001. 6. 30까지 20좌이상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와 합의

-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 '98년 상반기중 전기공사법시행령 개정
- 정보통신부 조치계획 : '97년 하반기중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개정

**1-3. 인쇄소 등록요건 완화**

가. 규제현황

- 인쇄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쇄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시·도)에 제출 의무화(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 인쇄시설 :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운전기, 조판시설 등

□ 인쇄소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등록청에 제출(시행령 제2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쇄소를 경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과(법 제6조)

나. 개선방안

□ 인쇄소 등록시 인쇄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허용

**1-4.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 및 증차시 충족되는 차량의 차령제한 완화**

가. 규제현황

□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종 및 사업구분에 따라 일정 년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1의2)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차령제한을 2000년부터 폐지할 계획(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에 기 반영 : 국회 계류 중)

□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증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각각 6월·2년 및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6제1항)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신·증차시 차령제한>**

차종	사업의 구분	사용연한(차령)	신·증차시 차령 제한
승용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5년
		중·대형 개인택시	5년 6월
		일반택시	3년 6월
		중·대형 일반택시	4년
	자동차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2년
	기타 사업용	8년	
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8년	1년
	기타 사업용	11년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합의

□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97년 하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1-5. 컴퓨터게임장의 설치 및 이용요금 규제완화**

가. 규제현황

- 컴퓨터게임장 등 유기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컴퓨터게임장의 경우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영업허가가 금지(공중위생법 제5조 및 복지부고시 제96-53호)
- 컴퓨터게임장의 전자유기기구 이용요금을 복지부고시로 정함
  - ※ 다만, 전자사격기 등 체력단련용 유기기구의 이용요금은 자율화

나. 개선방안

- 컴퓨터게임장의 지하층 설치금지 및 요금규제를 폐지
- 규제폐지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문화체육부에서 마련 중인 컴퓨터게임산업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시행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경원, 복지부, 문체부, 정통부와 협의

- 관계부처 조치계획 : '98년 상반기중 관련고시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98년 7월부터 시행

**1-6. 옥외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가. 규제현황

-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시 그 형태·규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화(옥외광고물 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구 분	옥 외 광 고 물
허가대상	4층이상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등
신고대상	3층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현수막, 벽보,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

※ 법령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위임되어 시·군·구청장이 관할

-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심의대상 :
    - 1) 법령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
    - 2) 시·군·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개선방안

- 허가대상인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내용의 단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사후규제토록 함
  - 변경사항이 허가·신고수리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광고물의 철거 등 명령 가능(동법 제10조)

〈허가·신고수리의 기준〉

- 금지되는 광고내용(동법 제5조)
- 광고물의 표시·설치방법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2조)
- 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물건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구체화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허가·신고수리의 기준 중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동법 제5조(금지되는 광고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 기타 허가·신고수리의 기준중, 광고물의 표시·설치방법(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2조), 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물건(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등은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내부부와 합의

- 내부부 조치계획 : '98년 상반기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8. 7. 1 부터 시행

2. 국민불편 관련 규제완화

2-1. 건축물 철거관련 절차 개선

가. 규제현황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철거·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 별도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 건축물 소유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거 신고(건축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때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서와 철거·멸실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말소신청(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

나. 개선방안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절차 생략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철거·멸실신고를 접수한 동사무소에서 시·군·구청 지적과에 통보하여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도록 조치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합의

-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97년 하반기 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2-2.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 명문화**

가. 규제현황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건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평면도 등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제4항)

※ 건축물 현황도면의 종류

- 배치도, 평면도, 부설주차장의 도면 등

※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공문으로 각 시·군·구에 시달 ('93. 6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당해 건축물에 한함)
- 당해 시·군·구의 건축직 공무원 또는 도면작성 능력을 보유한 공무원
- 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로서 건축분야 경력자
- 관련 기술자 등 자격소지자,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자 또는 주축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96. 11월)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서 '96. 12월까지 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를 사전 공고

나. 개선방안

- 건축물 현황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를 명문화
-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합의
-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97년 하반기중 건축물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2-3.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 자치단체의 회관시설사용을 허가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한 교육관련 수강 등을 신청할 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또는 복지회관 등 설치·운영 조례 관련 규정)
  - 대부분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 수수료 등을 선납토록 하고 있으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은 회관의 귀책사유 또는 시·도지사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환

나. 개선방안

□ 회관시설의 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시설 등 이용일전 일정기일(예 : 5일 또는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 등 이용일전 일정기일(예 : 5일 또는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예 : 10%) 공제 후 잔액 반환
- 시설 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내무부와 협의

□ 내무부 조치계획 : '97 하반기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상의 관련 규정 개정 권고

**2-4. 장애인 자녀의 학비지원절차 개선**

가. 규제현황

□ 장애인 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 학비 지급(장애인복지법 제22조)

나. 개선방안

□ 읍·면·동에서 학비지원 대상자임을 해당 학교에 직접 통보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보건복지부와 협의

□ 보건복지부 조치계획 : '97년 하반기중 「장애인복지사업지침」 개정

**3. 공동주택 관련 규제완화**

**3-1.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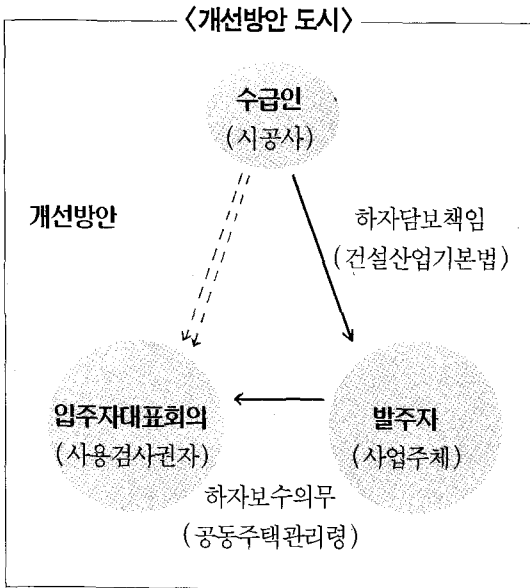
가. 규제현황

□ 공동주택을 도급계약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해 이중으로 하자보수보증

나. 개선방안

- 시공사(수급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
  -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등이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사업주체(발주자)로부터 사용검사권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이중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규정(보증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체(발주자)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변경해 주고 있음
- \* 개선방안의 경제적 효과 : 총공사비 3백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보증수수료 270만원 절감 가능  
 $[300\text{억원}(\text{총공사비}) \times 3\%(\text{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times 0.3\%(\text{보증서발급 수수료율})]$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협의

-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98년 중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 3-2.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 간소화

가. 규제현황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신·증축시 원칙적으로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등의 허가 필요(공동주택관리령 별표2)
  -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함으로써 증축 가능(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나. 개선방안

- 소규모 증축시 신고대상이었던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범위에 노인정과 입주자집회소를 추가

다.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협의

-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98년 중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

### 4.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등 과제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 4-1.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



1. 당초 개선방안

(’97. 6. 27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건축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설치과정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완화

2. 추진현황

〈확정된 개선방안〉

- 설치대상 : 현행 연면적 1만㎡ 이상 유지
- 설치비용
  - 현행 건축비용의 1%이상에서, 연면적 2만㎡이하는 0.7%, 2만㎡초과는 2만㎡까지 0.7%+2만㎡초과 0.5%로 하향 조정
  - 시·군지역 건축물의 설치비용은 일반건축물 0.5~0.7%, 공동주택 0.1~0.7%로 하향 조정
- 미술장식품의 범위 :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포함
- 미술장식품 심의 강화 및 사후관리 제도화

\* ’97 하반기 중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4-2.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

1. 당초 개선방안

(’97. 6. 27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건설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건축물 설계 허용

2. 추진현황

〈제1안〉 자가업무용(그룹소유 포함) 건축물에 한하여 ’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허용하고, 2000년도에 확대 여부 재검토  
 〈제2안〉 툃카대상공사에 한하여 ’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업무 허용

- ’97. 8. 27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제시한 안 중 제1안을 채택

4-3. 의약품유통관련 규제완화

1. 당초 개선방안

(’97. 6. 5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의 판매허용
  -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도 판매를 허용
-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
  - 제1단계 : 현행 「표준소매가격」 표시제도는 유지하되,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
  - 제2단계 : 의약품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
-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
  -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를 허용하되 3년간 시행을 유예

2. 추진현황

- 「의료개혁위원회」에 의견제출 요청('97. 6. 11)
-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 단순의약품의 약국의 판매허용
-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
-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

- '97. 10월중 의료개혁위원회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개혁위원회 안과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안을 종합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 확정할 계획

〈참고:의료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 단순의약품의 약국의 판매허용
  -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약국의 판매허용 범위, 허용시기 및 판매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 분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방안
  - 표준소매가격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 다만, 제도폐지시의 영세약국 도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
  -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는 의견일치
  - 다만,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

알림

한국공정경쟁협회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협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종훈 중앙대학교 총장, 독일연방 Dieter Wolf 카르텔청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상임위원을 연사로 모시고 다음과 같이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를 갖고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요일) 10:00~18:1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참가비 : 무료

※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 775-8870~2/F 775-887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